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(안 제4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부처별로 인증기관을 지정할 때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(제2항 신설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법령 개정과 연계되지 않는 제도 개선 사항

라. 입법효과

○ 인증기관 지정심사의 일관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(안 제5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전담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심사하고 정부가 이를 확인하도록 지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요건 심사를 요청(제3항)

○ 전담기관이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제출하고,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(제4항)

○ 전담기관의 심사 및 결과 제출,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·직접 심사(제5항)

○ 항 번호 및 인용 조항 정비(제6항·제7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부처 간 지정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부칙에서 전담기관 지정 전 신청은 종전 절차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마련

3. 제12조 제품인증표시 등 (안 제1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인증심사유형 도입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반영하고 표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특례(제1항 단서)를 삭제

○ 표시사항을 "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"에서 정한 사항으로 확대(제1항제8호)

○ 표시판을 인증서에 기재된 사업장에 내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통합(제3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인증표시 체계의 일관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4. 제13조 인증심사유형 등 (안 제13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설계·개발자 중심의 OEM 방식 확산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장 중심의 단일심사 체계를 개편하고, 법 제17조제6항이 위임한 인증심사유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조문 제목을 "인증심사유형 등"으로 변경

○ 「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5의 표준인증심사유형 체계를 반영하여 디(D)형, 이(E)형, 지(G)형으로 구분(제1항)

○ 유형별 심사방법을 별표 7의2로 정함(제2항)

○ 품목별·분야별 유형 적용·변경 시 심의를 거쳐 공고(제3항)

○ 유형별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로 정함(제4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인증 취득 주체와 제품 특성에 맞는 심사체계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5. 제14조 인증심사의 절차·방법 등 (안 제14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인증심사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유형 변경 시 신청 보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인증신청 후 한국산업표준, 인증심사기준 또는 인증심사유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제4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유형 변경에 따른 신청 대응의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6. 제15조 인증심사원 직무 규정 삭제 (안 제15조제3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제18조에서 인증심사원의 업무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중복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인증심사원의 직무 규정(제3항)을 삭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법령 간 중복 규정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7. 제16조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·절차·방법 등 (안 제16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인증심사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유형별 정기심사 대상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정기심사 대상을 D형 또는 E형 인증을 받은 자로 명시

○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

○ 별표 12 품목의 1년 주기 심사는 직전 연도 심사에서 핵심품질 부적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연도에 정기심사·이전심사를 받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심사 부담 완화 및 유형별 사후관리 체계 정립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부칙에서 시행 전 심사를 받은 경우 다음 회 주기는 종전(3년)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마련. 인증서비스 정기심사 주기는 현행 유지

8. 제17조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·방법 (안 제1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시판품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증도용 조사(확인조사)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조사 절차·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시판품조사·현장조사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절차·방법을 별표 9에서 정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조사 절차의 명확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9. 제17조의2 이행계획서 작성 등 (안 제17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수거등 명령 체계 도입에 따라 영에서 정한 이행계획서·결과 보고서 등의 서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수거등 이행계획서(별지 제14의2호서식), 수거등 결과보고서(별지 제14의3호서식), 보완명령 이행결과보고서(별지 제14의4호서식)를 규정

○ 종전 이행계획서 기재사항 규정은 서식으로 대체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수거등 이행 절차의 표준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0. 제17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등 (안 제17조의3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KS 부적합 제품 유통에 대응하고 인증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22조의2에 전담기관 근거가 신설되고 지정 등의 절차가 부령에 위임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지정요건(비영리법인 등, 조직·인력, 재정적·행정적 능력)을 규정(제1항)

○ 지정계획 공고, 신청서류, 요건 확인 결과 통보 절차를 규정(제2항부터 제4항까지)

○ 법 제2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부령 위임 업무(민원·상담 지원, 조사·연구 지원 등)를 규정(제5항)

○ 지정 및 지정취소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규정(제6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전담기관 지정·운영의 투명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1. 제18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서비스 (안 제1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제25조에서 우수 단체표준서비스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우수 단체표준서비스에도 우수 단체표준제품과 동일한 요건·절차(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실적, 인증능력 확인, 인정서·확인서 발급, 고시)를 적용

○ 공인시험·검사기관 인정 근거 법령 인용을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서비스 분야 단체표준의 공공구매 기반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2. 제21조의2 부상 및 증서 서식 (안 제21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영 조문번호 이동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"영 제30조의4제2항"을 "영 제30조의5제2항"으로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인용 조문의 정확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3. 제21조의3 우수기업등의 지정·지원 및 지정취소 등 (안 제21조의3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제31조의5에서 우수기업등 지정·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부령에 위임됨에 따라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산업표준 발전 기여 여부의 판단기준(한국산업표준 활용 수준·성과, 인증제품·서비스의 품질·사후관리 수준)을 규정(제1항)

○ 지정 공고·신청·심사·통보 절차를 정하고 유효기간을 4년으로 규정(제2항부터 제4항까지)

○ 지원내용(지정표지 제공, 최초 정기심사 주기 2년 범위 연장, 홍보)을 규정(제5항)

○ 지정취소 시 지정표지 제거 의무를 규정(제6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4. 별표 및 서식 정비 (안 별표 6·7·7의2·8·9·12, 별지 제14의2호서식부터 제14의4호서식까지 및 제16호서식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인증심사유형 도입, 조사 체계 개편, 수거등 명령 체계 도입, 단체표준서비스 확대 등 본문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(별표 7의2 신설), 인증심사기준(별표 8), 조사·확인조사 절차(별표 9), 1년 주기 심사 품목(별표 12), 표시판(별표 6·7) 및 관련 서식을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본문 개정 사항의 일관된 시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